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신청내용

신청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도축의뢰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공통)	가. 농장명 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또는 명칭)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출하 돼지정보	가. 출하 마릿수
출하 닭, 오리정보	가. 출하 마릿수 나. 닭, 오리의 종류 다. 품종 라. 성별 마. 일령 바. 평균체중

2.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기록·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돼지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농장식별번호 6자리, 일련(출하순번)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닭, 오리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도축일자 6자리, 도축장코드 3자리, 일련번호 2자리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이력번호 축종코드

구분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축종코드	0	1	2	3	5

5.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